출원번호통지서 페이지 1/3

관 인 생 략

출원 번호통지서

출 원 일 자 2014.04.08

특 기 사 항 심사청구(무) 공개신청(무) 참조번호(0057)

출 원 번 호 10-2014-0042003 (접수번호 1-1-2014-0336510-96)

출 원 인 명 칭 한국과학기술원(3-1998-098866-1)

대 리 인 성 명 유미특허법인(9-2001-100003-6)

발 명 자 성 명 권인소 전해곤 이준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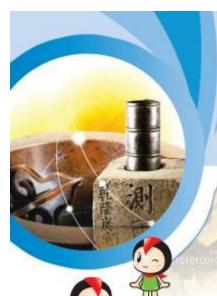
발명의 명칭 상호보완 이진 수열을 이용한 영상 디블러링 방법

특 허 청 장

<< 안내 >>

- 1.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,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,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납부자번호: 0131(기관코드) + 접수번호
- 3. 귀하의 주소,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즉시 [출원인코드 정보변경 (경정), 정정신고서]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특허로(patent.go.kr) 접속 > 민원서식다운로드 >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
- 4. 특허(실용신안등록)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,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.
- 5.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(특허·실용신안)나 마드리드 제도 (상표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제도 안내 : http://www.kipo.go.kr-특허마당-PCT/마드리드
- ※ 우선권 인정기간: 특허·실용신안은 12개월, 상표·디자인은 6개월 이내
- ※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,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,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[전자적교환허가서(PTO/SB/39)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6. 본 출원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특허출원 10-2010-0000000, 상표등록출원 40-2010-0000000
- 7. 기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출원번호통지서 페이지 2/3





특허 (실용신안)심사절차 안내

우리 청에 특허 (실용신안)를 출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객님의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고객상답센터: 1544-8080





먼저,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.

 출원인적격, 필수사항기재,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,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

출원과는 별도로 심사를 청구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.

 출원 후 5 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특허법 제 59 조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하며, 기술분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7 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('11, 8월말 가준), 이는 미국, 일본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.
-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15 만여 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, 고객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'특허로'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보내는 '의견제출통지서'를 받게 되면 , 고객님께서 <mark>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</mark>하셔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.

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%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,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율은 약 63%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('11, 8월말 기준).



의견서 등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서를,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.



-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3~5 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- 출원내용은 특허법 제 64 조에 따라 출원 18 개월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됩니다.
- 3)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'재심사청구'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'거절결정 불복심판'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(kipo.go.kr)를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은 고객상담 센터 (1544-808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원번호통지서 페이지 3/3

